



본 공지문은 귀하의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관리국(Air District) 시행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당 대기 오염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위해 작성된 공지문입니다.

수신: 포클로로에틸렌(PERC)을 사용하는 세탁 영업장

**주제: 포클로로에틸렌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철거해야 하는
세탁 시설**

2010년 7월 1일까지 포클로로에틸렌(PERC) 솔벤트 기계를 사용하는 다음의 세탁 시설은 해당 기계를 교체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PERC 기계를 철거해야 합니다.

- 공동 주택의 드라이 클리닝 시설
- PERC 솔벤트를 사용하도록 개조된 기계를 사용하는 시설
-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PERC 솔벤트 기계를 설치한 시설.

2010년 7월 1일까지 PERC 기계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드라이 클리닝 세탁 업체는 대기 관리국(Air District)의 포클로로에틸렌 및 합성 솔벤트 사용에 대한 규정(규정 11-16[Regulation 11-16])과 주법(드라이 클리닝 업체의 포클로로에틸렌 배출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기 위원회 ATCM - 캘리포니아 법규, 93109항 17호[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ATCM for Emissions of Perchloroethylene from Dry Cleaning Operations -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ection 93109, Title 17])에 위배됩니다.

또한 2010년 7월 1일이 지난 시점에서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된 PERC 솔벤트 기계를 사용하여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경우, 기계를 교체하거나 해당 기계의 연식이 15년이 되는 시점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PERC 기계 중에는 내년에 15년의 사용 제한 연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 관리국은 기한까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드라이 클리닝 업자에 대해 엄중 대처해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이나, 법규를 위반한 업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업체에 한해,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있을 시 2011년 7월 1일까지 해당 기계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해당 기계의 소유주/운영자는 대기 관리국의 법률부(Legal Division) 책임자를 만나 법규 준수 동의안(준수 일정)을 작성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 주택 시설은 법규 준수 동의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0년 7월 1일까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 안에 위치한 드라이 클리닝 시설이나 거주지와 동일한 벽, 바닥, 천장을 공유하는 경우 "공동 주택 시설"에 해당합니다.

뒷면에 계속 →

연락처:

Office of the District Counsel
939 Ellis Street
San Francisco, CA 94109
(415) 749-4920

준수 일정(Compliance Schedule)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PERC 기계 철거가 완료되어야 하는 연장 기한
- 위반시 벌금 내역:
 - 자격이 되는 비준수 드라이 클리닝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분기에 대해 분기별 벌금을 누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 제1사분기 - 250달러
 - ▶ 제2사분기 - 추가 500달러
 - ▶ 제3사분기 - 추가 750달러
 - ▶ 제4사분기 - 추가 1000달러

2011년 7월 1일까지 1년간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최대 벌금은 2500달러입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 일정을 어기는 경우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대기 관리국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법규 준수 절차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 공지 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기 품질 전문가(Air Quality Specialist) 전화 (415) 749-4780 로 Janet Simon 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 법규 준수에 관한 문의 사항은 법규준수 카운셀러 핫라인(Compliance Counselor Hotline) (415) 749-4999 로 문의해 주십시오.
- ☎ 허가와 관련된 도움이나 건축 허가(Authority to Construct) 신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http://www.baaqmd.gov/pmt/index.htm> 을 참조하시거나 엔지니어링부(Engineering) 전화 (415) 749-4990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Kelly J. Wee
법 집행국 이사
베이 지역 대기 품질 관리국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